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댓글 생성 방지 의무 부과>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32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② (생략) <u><신설></u>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을 말한다)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제82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딥페이크영상등’으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등을 유포·상영하는 경우는 이것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2조의8제1항및제2항).

그런데, 딥페이크영상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사람이 작성하는 것과 구분하기 어려운 자동 댓글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고, 이것이 여론 조작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¹⁾

이와 같은 자동 댓글의 대량 생산은 실제와 다른 가짜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여,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임.

1) KBS뉴스, “AI 댓글, 백만 원이면 제작…‘선거 여론 조작’ 대책은?”, 2024.1.17.

그러나 현행법이 딥페이크영상등에 대한 금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 생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실제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민의가 대표자의 선출 등 정치과정에 보다 정확히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 자동 생성 유해 콘텐츠 및 댓글 차단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시행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자동댓글 생성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해외 도입 사례 》

국가명	주요내용	비 고
영국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자동 생성된 유해 콘텐츠 식별 및 차단 기술 의무화, 투명성 보고 강화 -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아 중대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경우 경영진 개인에게 형사 책임 부과	2023년 제정
유럽연합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플랫폼 사업자에게 봇(Bot)을 이용한 여론조작 또는 댓글확산과 같은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적·절차적 조치 의무 부과 - 의무 불이행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	2024년 전면 시행
싱가포르	-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POFMA) - 봇(Bot)이나 가짜 계정을 사용하여 고의로 공익을 해치는 허위 정보(조작 정보)를 퍼뜨릴 경우 일반적인 허위 정보 유포보다 가중처벌함 - 플랫폼은 정부의 삭제 또는 정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벌 성격의 벌금 부과	2019년 제정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다만,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바, 몇 개 이상의 댓글부터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다수’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인공지능 생성 댓글을 사람이 작성한 댓글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이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금지 수준에 대한 합의 정도, 현실적인 조치 가능성, 과태료 부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댓글의 자동생성 방지기술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댓글 생성 방지 기술의 적용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고, 현시점에서 모든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게 자동댓글 방지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술력·재정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규제 도입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 규제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